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운영대학 모집 공고

대학 내 청년층 특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대학일자리센터」, 소형사업 운영대학 신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3월 11일

고용노동부 장관

I. 공모 주요내용 및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선정규모	- 소형사업 6개교 이내 * 금년도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소형 대학 중 평가 '우수' 대학 일부를 심사를 통해 대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어, 선정 규모는 조정 될 수 있음
신청요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2호(산업대학), 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중,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전문대학 ② 재학생수 5,000명 내외 대학(대학알리미에 등재된 "정원 내 인원" 기준) ③ 대학·청년층 밀집지역에 소재하거나, 지역·대학 특성 상 일자리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학(심사위원회 판단)
사업기간	'19. 4월 ~'20. 2월 * 매년 평가 등을 거쳐 계속지원 여부 결정
지원내용	- 사업비 연간 2억원(정부지원 50%, 대학·자치단체 50% 매칭) * 대학·자치단체 간 매칭비율은 자율조정 가능
접수기간 접수방법	'19. 3. 27(수)까지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제출 * 4월초 지방청(1차)·본부(2차) 선정심사 → 우선협상대학 발표(4.16 예정)
제 출 처	담당 고용센터(취업지원부서)

II. 모집공고 세부내용

- ☐ (사업목적) 대학 내 진로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기능적 연계 등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저학년 진로교육 확대 등 대학의 지원역량 강화와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 ☐ (사업방식) 정부·대학·자치단체 매칭방식*, 대학은 사업계획에 따라 민간 전문기관 컨소시엄 또는 자체적으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 * 연간 사업비 매칭비율: 정부 50% + 대학·자치단체 50%(매칭비율은 자율)
- ☐ (선정규모) 전체 6개교 이내
 - * 금년도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소형 대학 중 평가 '우수' 대학 일부를 심사를 통해 대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어, 선정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 (지원내용) 대학당 연간 사업비 2억원 (정부지원 50%, 1억원)
 - * 사업비 50%(1억원)는 대학과 자치단체(반드시 포함)가 매칭
- ☐ (사업기간) '19. 4월 ~ '20. 2월 (매년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 ☐ (신청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중 아래 소형사업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 응모 가능(캠퍼스는 제외)

<소형사업 신청요건(아래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

- ① 전문대학
- ② 재학생수* 5,000명 내외 4년제 대학
 - * 재학생수 기준: 대학알리미에 등재된 '정원 내' 재학생수 기준(휴학생 제외)
- ③ 대학·청년층 밀집지역에 위치하거나, 지역·대학 특성 상 일자리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학 등
 - * 대학일자리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판단

○ 신청제외 대상

- '18.12.31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및 한약사 양성을 위한 보건의료계열 학과의 재학생 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3 이상인 대학
- * 보건의료계열: 의·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작업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학과, 치기공학과, 보건행정학과 등

-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
- 교육부 발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대학구조개혁평가 D등급 이하)

○ 신청 시 유의사항

- 대학이 자체적인 취·창업 지원역량을 갖춘 경우에는 민간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 없이 **가급적 직접 참여 권장**(선정심사 시 우대)
- 다만, 아래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은 가능

* 민간 컨소시엄 시, 대학이 해당 민간기관에 사업을 재위탁하는 턴키방식 운영은 불가

◆ 「직업안정법」 제18조 내지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 단, 민간전문기관 대표자(법인 임원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신청일 기준)

- 소형사업의 경우, 2개 이상 대학의 공동 참여·운영은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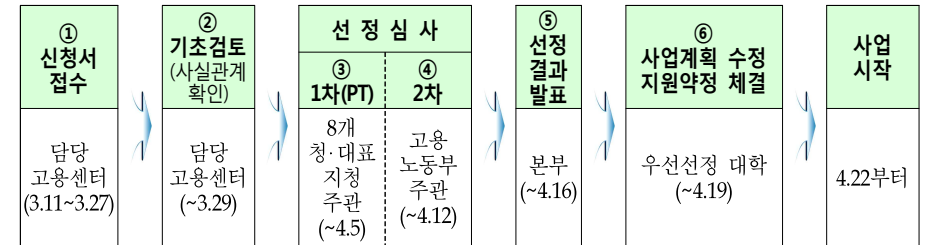
□ (신청기한접수) '19.3.27(수)까지 담당 고용센터(취업지원부서)에 공문을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구비서류 첨부)

* 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A4용지 크기로 양면인쇄 또는 복사하여 제본·편철 후 대학별 10부 제출(파일은 USB 또는 e-mail로 별도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접수 시 구비서류>

- ① 지원신청서 및 관련 사업 수행실적 1부(서식 1)
* 서식 1~4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참조
- ② 사업계획서(서식 2)
-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 3)
- ④ 민간전문기관 사업체 현황(서식 4, 해당하는 경우)
- ⑤ 대학설립인가증 사본 1부
- ⑥ 민간전문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신고필증 사본(무료직업소개사업자)
- ⑦ 자치단체 사업비 매칭 증빙자료(공문·협약서 등 형식 불문)

□ (심사절차일정) 기초검토 및 1~2차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학 발표



- ① 담당 고용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되, 우편은 3.27(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② 담당 고용센터는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류 구비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필요 시 현장실사)
- ③ 1차 심사: 프리젠테이션(PT) 및 서면심사 방식 → 심사결과는 순위 없이 본부로 추천
- ④ 2차 심사: 1차 심사 추천의견을 바탕으로 사업계획 등 서면심사, 권역 간 조정 등
- ⑤ 우선선정 대학교 발표

※ 사학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대학은 가급적 심사 시 제외

□ (관련문의) 담당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대학일자리센터 담당자)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차소희 주무관, ☎ 044-202-7445)

Ⅲ.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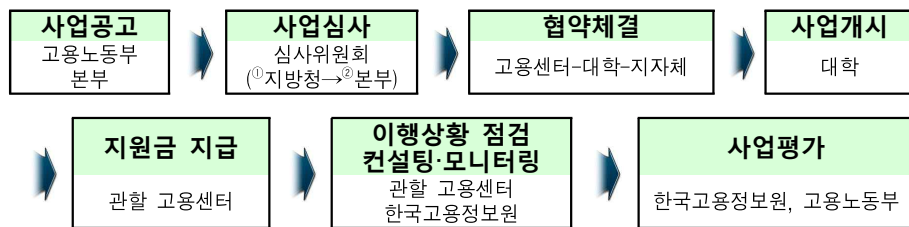
□ 사업목적

- 대학 내 진로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기능적 연계 등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저학년 진로교육 확대 등 대학의 지원역량 강화와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 추진경과

- '15. 7월,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 '15.10월, 추경사업으로 상명대 등 전국 21개 대학 선정(시범사업)
- '16. 2월, 건국대 등 20개 대학 추가선정(전국 41개교)
- '17. 2월, 명지대 등 20개 대학 추가선정(전국 61개교)
- '17.11월, 추경사업으로 삼육대 등 10개 (소형)대학 선정(시범사업)
- '18. 3월, 국민대 등 30개 (소형)대학 추가선정(전국 101개교)

□ 사업 추진체계



□ 추진현황

-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 (예산현황) '19년 220억원
- (사업기간) 지원약정 체결 시부터 최대 5년간

* 단,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및 운영유형(대형→소형) 변경 가능

- (사업구조) 기존 '대형'사업 외, '소형' 신설('17 추경) → 사업비 중 정부 지원 50%, 대학·자치단체 50% 매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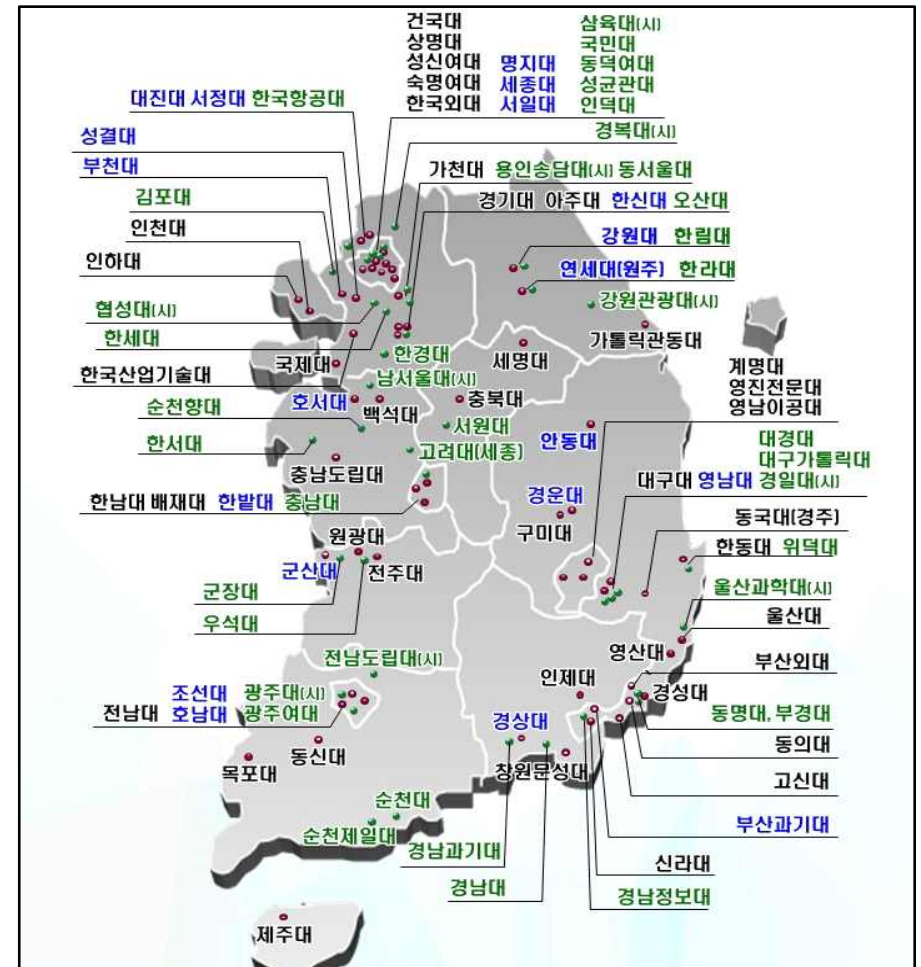
- (대형) 연 사업비 6억, 자대생 외 거점 및 지역고용거버넌스 기능 수행

- (소형) 연 사업비 2억, 자대생 중심 서비스(지역고용거버넌스 기능은 자율)

* 전문대, 재학생 5천명 미만 소규모 대학, 대학 밀집지역 대학 등 집중지원

- (지원현황) '19.2월 현재, 전국 101개* 대학에 일자리센터 운영 중

* (규모별) 대형 61, 소형 40 / (지역별) 수도권 24, 기타 47 / (학제별) 4년제 56, 전문대 15



□ 지원내용(소형): 운영비(인건비+운영경비), 프로그램비 지원

구 분		세부 활용가능 내역(예시)
운 영 비	인건비 · 총 사업비의 35~50% (70~100백만원)	○ 전문컨설턴트 인건비(법정 수당 등 포함) - 컨설턴트 3~4명 수준 채용(대형은 6~9명 수준) - 해외취업 관련 상담 담당자 1인 이상 지정·배치 - 산업체에서 인사 등 HRD 업무를 담당한 경력자 활용 가능(전일제·파트타임 채용, 비상근 컨설턴트제 운영 등) - 취업지원인력을 교직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심사 우대
	운영경비 · 총 사업비의 5% 이내 (10백만원)	○ 센터운영과 관련된 소요비용 등(운영경비, 소모품비 등) - 사무용품 구입, 출장비, 위원수당 지급, 기타 운영경비 등 - 업무추진비는 운영경비 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프로그램비 · 총 사업비의 45~60% (90~120백만원)		○ 취업지원 컨설팅 및 역량강화교육 지원 - 대학의 취업지원역량 진단, 컨설턴트·담당자 등 역량강화교육 ○ 교과목 개발 및 대학 취업지원체계 구축비 지원 - 진로지도 관련 교양 교과목 운영 의무화 - 교과목 개설·편성에 따른 강의지원, 학사제도 개편, 종합경력관리 시스템 개발, 취업전담 교수제 운영 등 ○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전문가료 구입비 - 고용정보원 및 민간취업기관 등이 발간한 전문자료 구입비용 등 ○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비 - 취업캠프·채용박람회,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일경험 기회확대 프로그램, 인문계열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 청년고용정책 및 대학일자리센터 홍보 관련 비용 등

* 담당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 “인건비·프로그램비 간에 총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전용” 가능

□ 주요 기능

- ①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기능 통합·연계(대·소형) 및 ②대학 밖의 공공고용서비스 기능과의 거버넌스 구축(대형)

- ① (대학 내) 대학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취·창업 지원, 진로교육·상담 등의 공간적·기능적 연계로 재학기간 전반에 걸친 종합경력개발 지원
- 필수교과 지정 등 저학년부터 적성·전공을 고려한 조기 진로지도
 - 학년별 맞춤형 지원, 전공별 커리어로드맵 마련 등 체계적인 진로 및 취·창업지원시스템 구축
 - 취성패,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외취업, 직업훈련 등 정부의 주요 청년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 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기능
- ② (대학 밖) 고용(복지)센터, 혁신센터, 지자체 등과의 연계·협업을 통한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 및 공동 협력사업 발굴·추진
- 인적·물적 규모확대를 통해 자대생 뿐 아니라, 타대생 및 인근지역 청년들에게까지 서비스 확대

참고 1 대학일자리센터 주요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대학 내 진로지원 및 취·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기능 연계에 필요한 사항 - 취·창업지원 관련 대학 내 행정부서 일원화 및 사업단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직제 등 위상강화를 통해 대학일자리센터가 총괄·조정 기능 수행, 교무위원급 센터장 의무 배치) △ 학사제도 제정 및 개정 등 취업지원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산업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편, 일학습병행제 확대 - 취업전담교수제 또는 (가칭)역량강화 포인트 적립제 등 역량강화 인프라 확산 -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입학·재학·졸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 인문계 전공자의 이공계 복수전공 확대 및 융합교육 확대 - 학생종합경력관리시스템 운영 △ 기타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자율 추진 ☞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참여로 대학이 기 추진 중인 인프라, 지원예산 등이 축소되지 않아야 함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	△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 - 적성·전공 등을 고려한 진로탐색 및 진로설정 지원(직업심리검사 및 역량진단 등 활용) - 진로지도 교과목을 교양필수 과정으로 지정 의무화 - 저학년을 포함한 재학생 진로지도 프로그램 대폭 보장 → 계열·분야별 프로그램, 「진로 상담가이드」 개발·보급, 「취업지원가이드(전문대/일반대)」 보완 - 교수 및 교직원 대상 진로지도 역량강화 교육 등 자체 프로그램 운영 △ “진로탐색·진로설정·역량개발·취업지원” 등으로 연계되는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부 청년지원사업, 훈련 등 청년고용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활성화 ① 직무역량에 기반한 교육·훈련 및 역량개발 단계 - 인문계열 이공계 복수전공 및 융합교육 확대, 여대생 특화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중소기업탐방, 현장실습(재학생직무체험 등), 인턴십, 일학습병행 등 일경험 기회 확대 - 창업교육 연계·효율화 및 취업캠프 등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②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부청년고용정책 홍보 - 학생, 교수, 인근 청년들에 대한 찾아가는 홍보·설명회 실시 - 청년고용정책, 학교 내 취·창업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만족도 제고 노력 ③ 산업현장과 연계한 적극적 취업지원·알선 단계 - 워크넷을 활용한 재학생·졸업생, 타대생, 특성화고 등에 대한 취·창업지원(설명회 등) - 상담·훈련 등 종합적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은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과 연계 - 해외취업 지원(해외취업상담 및 컨설팅, 해외취업박람회 개최 등) ④ 사후관리 단계 - 학과·전공별, 업종·직무별 등 졸업생 취업 D/B 구축 및 취업경로 분석·활용 △ 기타 대학에서 진로 및 취·창업지원 서비스 강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자율 추진
지역 청년고용 거버넌스 구축·운영 (소형사업은 자율)	△ 지역 내 고용(복지)센터, 자치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과의 연계·협업을 통해 청년층 대상 고용서비스 핵심 전달체계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고용(복지)센터·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주기적 협의체 운영 및 공동·연계프로그램 운영, 인력 수요·공급 관련 협업·정보교류 등 - 인근 특성화고, 타대생 등 지역청년에 대한 서비스 및 청년고용정책 홍보, 인근 대학 취·창업지원 담당자들과의 정보교류 등 △ 기타 대학에서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율 추진

참고 2 대학일자리센터 선정심사 기준

구분	심사지표	주요 내용(예시)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40)	진로 및 취·창업지원 인프라 현황 (20점)	■ 취·창업지원 관련 총장 등 대학의 의지와 비전 수립 - 진로지도, 취·창업 지원에 대한 총장 등 대학 경영진·교직원의 사업의지와 대학의 인재상 및 목표 등이 명확한가? ■ 취업지원 관련 조직 및 인력, 자체 편성예산 등 - 자체 취업지원 조직의 인원수, 부서위상, 센터장의 지위, 직원의 경력·근속연수, 자격증 등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인력수, 사무실 위치 및 학생 접근성, 직원 1인당 학생수, 전체 예산 중 취업지원 관련 조직의 예산금액 등 ■ 진로지도 및 취·창업 관련 교과목 및 담당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계획 등의 적절성 -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관련 교과목, 비교과프로그램 편성, 교수·교직원·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역량강화 교육연수 등 ■ 정부지원사업 수행 능력 - 대학일자리센터 관련 유사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최근 3년간)
	대학일자리센터 설치·운영계획 (20점)	■ 대학일자리센터 설치·운영계획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등 - 대학내 취·창업지원기능의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이 가능한가? - 대학일자리센터장의 지위(교무위원급 이상), 설치위치, 대학 내 조직기구의 위상 등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가? - 대학 취업지원인력의 정규직 변경계획 등을 반영하고 있는가? ■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 학교 측의 인력·시설 확충 등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학사제도 개편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산업수요를 반영한 교과목 개편, 인문계 전공자 이공계 복수전공 및 인문계 전공자 융합교육 확대 등 - 학생종합경력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서비스강화 (60)	진로 및 취·창업지원 서비스 강화 (35점)	■ 계획 및 성과달성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 체계적인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성과달성이 가능한가? ■ 학년별, 전공별, 유형별 등 맞춤형 진로지도서비스 제공 - 적성, 전공을 고려한 진로목표설정 지원(주요 심리검사), 진로지도 교과목의 필수과목 지정 등을 통하여 저학년 때부터 체계적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 ■ 산업현장 수요 및 직무에 기반한 체계적 일 경험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수립 - 중소기업탐방, 재학생 직무체험, 현장실습 등 산업현장 수요에 기반한 체험형 및 취업연계형 일 경험 프로그램의 단계적·체계적 운영계획 수립 ■ 교수, 교직원 등의 진로지도 참여의 적극성 - 진로취업지원 전담교수 배치 등 교수 및 교직원의 적극적 진로취업지원 참여, 대학

구분	심사지표	주요 내용(예시)
		- 일자리센터와 학과·전공 간 연계·협력계획이 반영되어 있는가? - 교수 및 교직원 대상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역량강화 교육이 가능한가? ■ 계획 및 성과달성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 취업지원서비스 강화계획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성과달성이 가능한가? - 타대생 및 인근지역 청년들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포함은 필수 - 취업지원 관련 교과목 개편, 취업박람회, 취업강좌, 취업캠프, 현장실습 및 직무체험, 취업동아리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정부 지원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정부지원 인턴십, 재학생 직무체험, 중소기업탐방,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의 청년취업지원 서비스 참여계획이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가?
	해외취업 지원역량 (10점)	■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등 - 해외취업 전문인력 배치, 해외취업 박람회 개최,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 등이 가능한가? ■ 해외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 저학년 때부터 해외취업관련 상담, 경로 설정 등 진로지도, 주기적인 강좌(특강) 진행, 해외취업 관련 교과목 개편 및 학점 인정 등이 가능한가?
	청년고용 정책 체감도 제고 (15점)	■ 대학 내 정책 전달체계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등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지역 청년들에 대한 청년고용정책 홍보계획 및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대학일자리센터 접근성 제고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지역 청년고용 거버넌스 [소형사업은 자율 운영]	외부기관과의 협업	■ 자치단체, 고용센터,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창조경제혁신센터, 인근 대학, 기업 등과의 협업·연계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등 - 교외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연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고용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존)·자치단체 등과의 지역에 청년고용거버넌스 운영 관련 역할분담, 담당자 지정, 지역단위 취·창업지원프로그램 개발 등 연계·협업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합계	100점	■ 각 지표별 점수 합산
	가점	■ '18년 고용부 「재학생 직무체험」 운영대학 성과평가 결과(우수 3점, 보통 1점) ■ 민간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 없이 대학일자리센터를 자체 운영하는 경우(2점) ■ 여대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충실히 갖춘 경우(2점) ■ '18년 동아일보 청년드림대학 선정 및 '18년 Best Practice 수상 대학(3점)

참고 3 '19년도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한 대학

구 분	학 교 명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50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벌),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기독교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한영신학대),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송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케이씨(KC)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구 분	학 교 명
전문대학 (123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북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교간호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문경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일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성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북과학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동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서정대학교, 성덕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인덕대학교, 장안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영대학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서식 1 **지원신청서 및 관련 사업 수행실적**

대학일자리센터(소형) 사업 지원신청서				
기 관 현 황	대 학 명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재학생수
	대 표 자 (총 장)		생년월일	
	담 당 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사무실/휴대전화)	E-mail
	학 제	☐ 4년제, ☐ 전문대(☐ 2년제, ☐ 3년제), ☐ 산업대학		
컨소시엄 기관명	※ 민간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작성			
참여 희망사업	대학일자리센터(소형사업)			
2019년도 대학일자리센터(소형사업) 사업 운영대학 선정공모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대학교 총장 (인)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소장 귀하				
※붙임 : 관련 사업 수행실적				

【붙임】

관련 사업 수행실적

(1) 최근 3년간 공모대상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 실적

연도	발주기관	사업명	사업비 규모	사업내용 및 실적
2016				
2017				
2018				

- * 발주기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위탁 기관 또는 부처명 기재
 ** 사업비 규모 : 위탁받아 실제 지원받은 사업비 규모를 기재(단위: 천원)
 *** 사업내용 및 실적 : 실시인원을 포함하여 계량 지표로 기재

(2) 기타 취업지원 유관분야 사업수행 실적

연도	발주기관	사업명	사업비 규모	사업내용 및 실적
2016				
2017				
2018				

- * 발주기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위탁 기관 또는 부처명 기재
 ** 사업비 규모 : 위탁받아 실제 지원받은 사업비 규모를 기재(단위: 천원)
 *** 사업내용 및 실적 : 실시인원을 포함하여 계량 지표로 기재

서식 2 사업계획서

대학일자리센터 사업계획서

※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하고, 기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필요시 첨부('18.12.31. 기준으로 작성)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의 분량은 100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재내용에 따라 별지작성 및 서식은 변경 가능

I. 대학 현황

①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 관련 교내 부서·기관 현황

명칭	소속기관	주요업무	설치일	설치근거	인원

<대 학 조 직 도 (대 학 일 자 리 센 터 관 련)>



② 취업지원 관련 대학의 재정지원 현황(인건비, 사업비 등)

※ '18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단위: 명, 백만원)

명칭	소속기관	인원	인건비총액	사업비 총액	비고

③ 대학 취업지원부서(인력) 현황

구 분	내 용					
위 상	※ 대학기구 내 위상, 센터장의 지위, 대학일자리센터로의 개편여부 등 기재					
직원현황	총 직원수	명	행정직	명	전문인력*	명
성 명	직 위	취업지원부서 근무기간	관련 학위	관련 자격증	비 고	
		○년○개월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기재	
'18년도 예산	대 학 총예산 (A)	백 만원	취업지원부서 예산 (B)	백 만원	비율 (B/A)	%
운영계획	※ 민간컨설턴트 투입에 따른 기존 취업지원부서 근무인원 정(현)원 임의 조정 방지대책, 정규직 전환 계획 등을 포함하여 기재					

* 소정의 경력(취업관련 업무 평균 3년) 혹은 자격증(직업상담사 등)을 가지고 취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 위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첨부

※ 직원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페이지로 작성 가능

④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교과목 개설 현황('18년)

○ 진로지도 관련 교과목

교과목명	인정학점	개설학기	강의정원	강의수	전공/교양	비고

○ 취업지원 관련 교과목

교과목명	인정학점	개설학기	강의정원	강의수	전공/교양	비고

○ 창업지원 관련 교과목

교과목명	인정학점	개설학기	강의정원	강의수	전공/교양	비고

□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현황('18년)

○ 진로지도 관련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일정	참여인원	세부내용

○ 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일정	참여인원	세부내용

○ 창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영일정	참여인원	세부내용

Ⅱ. 사업추진계획('19.4월 ~ '20.2월)

※ 공고문·사업개요 및 '18년 「대학일자리센터 시행지침」 등을 참고하여 '19.4월부터 '20.2월까지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별지 작성 가능, 기재 내용에 따라 서식·목차 등은 변경 가능

① 사업목표

○

-

② 대학일자리센터 설치계획

※ 취·창업관련 대학행정부서 및 사업단 등 연계체제 구축(대학일자리센터에서 총괄·조정할 수 있는 대학 내 위상 부여, 센터장은 처장·교무위원급 이상으로 배치) 및 대학 내 청년고용협의회 설치·운영 등

※ 대학일자리센터 설치 위치(공간규모, 학생 수, 학교여건 등 고려)

※ 대학일자리센터에 대한 학교 측의 인력(행정인력·전문인력 등), 집기, 부품 등 편의 시설 제공 계획 등

※ 학생들이 대학일자리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학교 측의 지원방안

○

-

③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 학사제도 제정 및 개정 사항, 경력개발시스템 구축·개선 등

※ 교수, 교직원, 민간컨설턴트 등의 취업지원 역량강화 세부 추진계획을 반드시 포함

※ 장기적으로 전문 취업지원인력의 정규직 전환계획 반드시 포함

※ 단,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추진으로 학교에서 기 추진 중인 취업지원 인프라, 사업 규모 등이 축소되지 않아야 함

○

-

④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서비스 강화

○

-

⑤ 해외취업지원(필요 시 작성)

○

-

⑥ 청년고용정책 체감도 제고

○

-

⑦ 외부기관과의 협업

※ 고용(복지*)센터, 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존 등과의 협업계획으로, 소형사업 운영대학의 경우에는 필요 시 작성

※ 단, 고용센터·지자체와의 상시적 소통 및 연계 계획은 반드시 포함(소형사업도 해당)

○

-

⑧ 기대효과

○

-

서식 3 예산집행계획서

예 산 집 행 계 획 서

① 총사업비: 2억원을 기준으로 작성 (① + ② + ③)

② 세부 예산내역(지자체 부담금은 자율)

○ 정 부 지원금(①): _____ 천원(_____ %)

○ 지자체 부담금(②): _____ 천원(_____ %)

○ 대 학 부담금(③): _____ 천원(_____ %)

③ 세부사업별 예산집행계획 (총사업비 기준)

(단위: 천원)

항목			소요예산				산출내역
			계	정 부 지원금	지자체 부담금	대 학 부담금	
총 계							
운 영 비	인 건 비	소계					
	운 영 경 비	소계					
프로 그램비		소계					

서식 4 민간전문기관 사업체 현황

민간전문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

※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작성

1 종사자 현황

- 총 종사자 수(대표자 포함): _____명
- 종사자 중 전문 취업컨설턴트 현황

성 명	직 위	자격 및 경력사항(취업지원 유관분야)

※ 대표자 및 임원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적 별도 기재 제출

2 물적 현황(시설 등)

※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등 시설보유 현황(면적 등) 기재

3 경영 상황

※ 현재 사업체 자산 및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상태를 간략히 요약하고 입증자료 등 첨부